

부속서 14-가  
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

제1조

목적

이 부속서는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에 대하여 중개인의 지원으로 광범위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상호 합의된 해결책의 발견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

적용범위

중개 메커니즘은,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제2장(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 접근)과 이에 속하는 부속서상의 것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<sup>1</sup>에 해당하는 모든 사안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관세를 제외한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.

제1절

중개 메커니즘상의 절차

---

<sup>1</sup> 이 부속서의 목적상,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은 비농산물 시장접근, 그리고 무역구제,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,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, 무역원활화, 원산지 규정, 긴급수입제한 및 제2장(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)의 분야별 부속서를 포함하여 관련된 무역 규칙을 포함한다. 이는 농산물 무역, 서비스 및 설립, 문화 협력, 정부조달, 경쟁, 지식재산권, 지급 및 자본이동, 그리고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제외한다.

### 제3조

#### 중개절차의 개시

1.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중개절차에 임하도록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. 그러한 요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제출된다. 그 요청은 요청 당사국의 우려사항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충분히 자세해야 하고, 다음이어야 한다.

가.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를 적시할 것

나. 그 조치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미치는 것으로 요청 당사국이 믿는 주장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진술을 제공할 것, 그리고

다. 그러한 무역 효과가 어떻게 그 조치와 연결된다고 요청 당사국이 판단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

2. 그러한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그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, 그 요청의 접수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서면 응답을 제공한다.

### 제4조

#### 중개인의 선정

1. 중개절차를 개시한 경우, 양 당사국은 요청에 대한 응답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중개인에 관해 합의하도록 장려된다. 양 당사국이 정해진 기한 내에 중개인에 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,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추첨으로 중개인을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각 당사국은, 요청의 제출로부터 5일 이내에, 그 당사국의 국민이 아니고,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며, 중개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 3인의 명부를 작성한다. 그 명부의 제출로부터 5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명부에서 최소한 하나의 이름

을 선정한다. 그 다음에 무역위원회의 의장 또는 의장의 대리인은 선정된 이름 중 추천으로 중개인을 선정한다. 추천에 의한 선정은 양 당사국 대표의 임석 하에 추천에 의한 임명 요청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진다.

2. 중개인은, 문제되는 조치와 관련이 있는 대상 분야에서 전문가이어야 한다.<sup>2</sup> 중개인은, 양 당사국이 그 조치와 그 가능한 무역 효과를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도록 공평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지원한다.

## 제5조

### 중개절차 규칙

1. 절차의 초기단계에서, 중개절차를 개시한 당사국은 중개인의 임명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제에 대한 상세한 기술, 특히 문제가 되는 조치의 운영 및 그 무역 효과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중개인과 다른 한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. 이 제출을 전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은 문제의 기술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다. 어느 한 쪽 당사국은 관련된다고 간주하는 모든 정보를 자국의 기술 또는 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.

2. 중개인은 초기단계를 수행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, 특히 양 당사국과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협의할 것인지,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도움을 구하거나 이들과 협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3. 초기 단계에 이어, 중개인은 자문 의견을 제공하고 양 당사국이 고려할 만한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다. 모든 그러한 의견에서, 중개인은 문제되는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

---

<sup>2</sup> 예를 들어, 표준 및 기술 요건에 관한 경우, 중개인은 관련 국제표준제정기관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.

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고, 그 조치의 정책 목적에 대한 정당성을 의문시하여서도 아니 된다. 중개인은 상호 합의된 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과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회합할 수 있다. 이 절차 단계는 중개인의 임명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상적으로 완료된다.

4. 중개절차는 비밀이며, 요청을 받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그 밖의 장소에서나 방법으로 수행된다.

5. 중개절차는 다음으로 종결된다.

가. 양 당사국의 해결 합의에 대한 서명으로, 그 서명일에

나.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, 그 합의일에

다. 양 당사국과의 협의 후 추가적인 중개 노력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는 중개인의 서면 선언으로, 또는

라. 중개절차에 따라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한 후, 그리고 중개인의 자문 의견 및 제안을 고려한 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면 선언으로

## 제2절

### 이행

## 제6조

### 상호 합의된 해결책의 이행

1. 양 당사국이 해결책에 합의한 경우 각 당사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.

2. 이행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단계나 조치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알린다.

### 제3절

#### 일반 규정

### 제7조

#### 분쟁해결과의 관계

1. 중개 메커니즘상의 절차는 이 협정 또는 다른 협정상 분쟁해결절차를 위한 근거로서 작용하도록 의도되지 아니한다. 당사국은 그러한 분쟁해결절차에서 증거로서 다음에 의존하거나 이를 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가. 중개절차 과정에서 다른 쪽 당사국이 취한 입장

나. 중개의 대상이 된 비관세조치에 대한 해결책을 다른 쪽 당사국이 수용할 의향을 보였다는 사실, 또는

다. 중개인이 제시한 제안

2. 중개 메커니즘은 제14장(분쟁해결)상의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.

### 제8조

#### 기한

이 부속서에 언급된 어떠한 기한도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.

## 제9조

### 비용

1. 각 당사국은 중개절차에의 참여로부터 발생된 자국의 비용을 부담한다.
2. 양 당사국은 중개인의 비용을 포함하여 행정적인 사안으로 발생된 비용을 분담한다.

## 제10조

### 검토

1. 양 당사국은, 제14.2조에 정의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안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그러한 사안을 다루는 상응하는 메커니즘<sup>3</sup>의 설치에 합의할 경우, 그 중개 메커니즘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합의한다. 적용 범위의 확대는 그러한 합의의 적용일부터이다. 이는 상응하는 세계무역기구 메커니즘의 적용 범위에 대한 추가적 확대에도 적용된다.
2. 이 협정의 발효 5년 후, 양 당사국은 획득된 경험, 그리고 상응하는 세계무역기구의 메커니즘의 발전에 비추어, 중개 메커니즘을 수정할 필요성에 대해 서로 협의한다.

---

<sup>3</sup> “상응하는 메커니즘”이란 아프리카 그룹, 캐나다, 유럽연합, 최빈개도국 그룹, 비농산물 시장접근에 관한 11개 개발도상국 그룹, 뉴질랜드, 노르웨이, 파키스탄 및 스위스가 2007년 7월 23일자 문서 TN/MA/W/88 “비관세장벽-비관세장벽에 대한 해결의 촉진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제안”에서 제안한 메커니즘, 또는 2007년 7월 23일자 문서 TN/MA/W/88을 대체하는 문서에서 제안된 그 밖의 유사한 메커니즘을 말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.